

# 졸업논문시행규정(3-5-7)

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40조 및 동 시행세칙 제74조의 2 제6항에 규정된 학사학위 수여요건인 졸업논문의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졸업논문 제출자격) 본 대학교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서 졸업기준(취득학점, 등록회수 및 교육과정 이수 등)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. 단, 외국인 유학생은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다.(개정 2007. 3. 22)

제3조(졸업논문의 구분) 졸업논문은 예·체능계 학부(과)는 실기 및 작품발표, 기타 학부(과)는 논문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위의 방법으로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학부(과)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실험실습보고 또는 졸업종합시험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.

제4조(졸업논문의 선정) 각 학부(과)에서 실시할 졸업논문의 종류, 양식, 실시 시기는 매 학년 초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결정 공고한다.

## 제2장 졸업논문 관리위원회

제5조(졸업논문 관리위원회의 설치) 졸업논문의 실시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졸업논문 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(개정 '04. 8. 11)

제6조(위원회의 구성) 위원회는 교무처장, 각 학부(과)장, 학사관리팀장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논문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
2. 논문의 평가 및 합격사정에 관한 사항
3. 시험 교과목 출제의 범위와 방법 및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
4. 실기 및 작품발표 종목 심사방법에 관한 사항
5. 실험실습보고서의 심사방법에 관한 사항
6. 기타 졸업논문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

제8조(임무) ① 위원장은 회의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졸업논문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

제9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### 제3장 졸업논문

제10조(제출시기) ① 논문제출자는 논문작성 계획서를 4월 말(후기졸업 예정자는 전년도 10월 말)까지 소속 학부(과)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2조의 논문제출자격이 인정된 자는 지정된 규격 및 양식 등에 맞추어 10월 말(후기졸업 예정자는 5월 말)까지 지도교수를 경유 소속 학부(과)장에게 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(논문지도교수) ① 졸업논문 지도교수는 5월 말(후기졸업 예정자는 전년도 11월 말)까지 소속학부(과) 전임교원 중에서 학부(과)장의 내신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졸업논문 지도교수는 논문작성의 전 과정을 지도하여야 하며, 논문은 개인연구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실험실습보고의 공동연구는 3인 이내에 한하여 해당학부(과)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.

제12조(심사 및 평가기준) ① 제출된 논문의 심사 및 평가기준은 학부(과) 교수회에서 결정 시행한다.

② 논문의 심사는 논문 지도교수를 포함한 해당학부(과) 전임교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실시하며, 합격·불합격의 여부만을 심사한다.

③ 심사위원은 각 학부(과)장의 내신에 의거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제13조(합격자 결정) ① 논문은 제출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합격·불합격을 판정한다.

② 논문의 합격은 심사위원의 과반수의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.

제14조(결과보고) 각 학부(과)장은 논문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합격자 결정 후 7일 이내에 졸업논문 시행결과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5조(논문의 보존) 제출된 논문은 각 학부(과)에 보존한다. 다만, 우수한 논문은 중앙도서관에 비치할 수 있다.

제16조(경비부담) 졸업논문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
### 제4장 실기발표 및 실험실습보고

제17조(시기 및 방법) 예·체능학부(과)의 실기 및 작품발표, 기타 학과(부)의 실험실습보고를  
과하는 학생은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.

## 제5장 졸업종합시험

제18조(시기) 졸업종합시험(이하 “시험”이라 한다.)은 11월 중(후기졸업 예정자는 5월 중)에  
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, 그 시기는 매 실시 1개월 이전에 공고한다.

제19조(실시교과) ① 시험은 5개 교과에 대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, 각 교과는 1개 또는  
그 이상의 교과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.

② 시험의 교과 및 과목은 각 학부(과) 교수회에서 선정하여 총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.

제20조(출제위원의 임명) ① 출제위원은 시험 실시 2개월 이전에 각 교과별로 학부(과)장이 내  
신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출제위원은 시험 실시 15일 이전에 시험문제를 교무처에 제출한다.

제21조(실시방법) ① 시험의 감독위원 및 채점위원은 각 학부(과)장의 내신에 의거 총장이 임  
명한다.

② 기타 시험에 관한 제반 업무는 졸업논문 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.

제22조(평가) ① 합격의 기준은 전 교과 평균 60점 이상으로 하고, 매 교과별 40점 이상으로  
한다.

② 각 학부(과)장은 시험실시후 1주일 이내에 개인별 합격·불합격 여부(교과별 과락이 있을  
경우에는 교과명을 명시)를 교무처에 제출한다.

③ 전 교과 평균은 60점 이상이되 교과별 과락이 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해당 교과의  
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
## 제6장 기 타

제23조(합격자 공고 및 학적부 기재) 교무처는 졸업논문의 합격 여부를 공고하고, 학적부에 기  
재한다.

제23조의 1(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의 면제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논문 및 졸  
업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.(신설 '96. 11. 6)

1. 재학 중 전공과 관련된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자.
2. 재학 중 전공과 관련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자.

3. 재학 중 전공과 관련하여 권위 있는 문예지 등단(언론사 신춘문예 포함), 전국 규모의 예·체능계 대회에서 3위 이내의 입상실적이 있는 자.
4. 재학 중 전공과 관련하여 국내외 우수 기업 등에서 시행하는 대학(원)생 논문대회에서 입상한 자.
5. 공인 외국어시험 일정 성적 이상인 자.
6. 해외현장학기를 이수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(신설 '09. 7. 1)

② 위 제1항 각호의 적용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소속학부(과)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 후 시행하며, 그 결과를 개인별 학적부에 기재한다.(개정 '97. 9. 3)

제24조(기타)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1993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1996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1997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04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